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통령경호처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화 등〉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081호)

2025. 9.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 김우영 · 양부남 · 이개호 · 김문수 · 이성윤

문정복 · 장경태 · 최혁진 · 박지원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8. 11.

3. 회 부 일 : 2025. 8. 12.

※ 의안번호 : 1208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감사관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인사를 감사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경호처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1명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호조직의 특성상 상하 위계가 엄격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부 직원인 경호공무원이 감사관을 맡을 경우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감사관 근거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해 조직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한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의 감사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감사관을 외부 전문가 임용이 가능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감사관의 임기·자격요건·분장사무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경호처 소속공무원¹⁾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조의2(감사관) ① 경호처의 감사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호처에 감사관을 둔다. ② 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③ 감사관의 임기, 자격요건, 분장사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정치적 중립) 소속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경호처 감사관은 지난 1981년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후 근거 법령과 일부 자구의 변경을 거쳐, 현재는 「대통령 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에 근거하여 처장 직속의 3급 경호 공무원으로 임명되고 있음.²⁾

1) ‘소속공무원’이란 경호처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의미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소속공무원”이란 대통령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한편, 내부 인사에 의한 자체 감사 시스템은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내부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고,³⁾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⁴⁾

「공공감사법」의 적용 대상기관은 감사원이 매년 초 지정하여 공고하고 있는데, 2025년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자치단체 258개 등 총 789개의 기관이 「공공감사법」의 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⁵⁾ 경호처는 동 법의 제정 당시부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내부 인사에 의한 자체 감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었음.⁶⁾

이에 개정안은 경호처 감사관 직위를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함으로써 내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외부의 시각을 통해 감사의 독립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감사·법률·회계 등 특정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통해 감사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입법취지로 이해됨.

2)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하부조직) ③ 처장 밑에 감사관 1명을 둔다.

④ 감사관은 3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3)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이해」, 2014, p.3

4)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감사기구의 장의 임용)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 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2항·제4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제4항·제5항을 준용한다.

5) ‘2025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기관 현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7 참조.

6) 대통령경호처는 「공공감사법」의 적용 대상인 ‘중앙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중앙행정기관”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처·청과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경호처는 지난 2025년 5월 조직쇄신 계획을 발표하며 그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개방형 감사관 공모’를 포함하였는데,⁷⁾ 이후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완료하고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음(2025. 8. 27. 기준).

따라서, 경호처 감사관의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경호처의 자체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달성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개정안은 경호처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간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를 신설하고 있는데,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는 경호처의 직무 성격상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강조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인 의무를 넘어 ‘경호’ 직무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직접 연결하여 그 의무 위반 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정보원·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소속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다수의 입법례⁸⁾가 존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임.

7) 대통령경호처 보도자료(2025. 5. 20.), “경호처, 확 바꾼다… 고강도 ‘조직쇄신’”, p.1

8) 「국가정보원법」 제3조(국정원의 운영 원칙) ① 국정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여야 한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③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 소속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군사법원법」 제37조(군검사의 직무) ② 군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회법」 제42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②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특별감찰관법」 제4조(정치적 중립) 특별감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문 의 처
02)6788-5016

참 고

2025년 「공공감사법」 적용 대상기관 현황

(단위: 개)

구분	내용	기관명	
중앙 행정 기관 (51)	정부조직법 에 따른 부·처·청 (41)	부(19)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처(3)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청(19)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재외동포청, 검찰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새만금개발청, 우주항공청
	공감법에 따른 기관 (6)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공감법 시행령에 따른 기관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지방 자치 단체 (258)	특별시· 광역시·특 별자치시· 도(16) ※제주 제외	특별시(1)	서울특별시
		광역시(6)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도(8)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시·군 ·자치구 (226)	시 (75)	(경기)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군포시, 김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용인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원주시, 제천시, 춘천시, 태백시 (충북) 청주시, 충주시 (충남) 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천안시 (전북) 군산시, 김제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전남) 거제시, 광양시, 나주시, 남원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경북)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포항시 (경남)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진주시, 창원시, 통영시
		군 (82)	(광역) 부산광역시기장군, 대구광역시달성군, 대구광역시군위군, 인천광역시강화군, 인천광역시옹진군, 울산광역시울주군 (경기)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 고성군,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전북) 고창군,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완주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안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봉화군, 성주군, 영덕군, 영양군,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구분	내용	기관명	
			청도군, 청송군, 칠곡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구 (69)	(서울)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동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부산) 강서구, 금정구, 남구, 동구,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중구, 해운대구 (대구) 남구, 달서구, 동구, 북구, 서구, 수성구, 중구 (인천) 계양구, 남동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중구 (광주) 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서구 (대전) 대덕구, 동구, 서구, 유성구, 중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중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의 교육청(16) ※제주 제외	특별시(1)	서울특별시
		광역시(6) 특별자치시(1)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도(8)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공공기관 (480)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267)	시장형 (14)	(산업부) (주)강원랜드, 한국가스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토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문체부)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식품부) 한국마사회 (산업부)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DN(주), 한전KPS(주)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식회사에스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수부) 해양환경공단 (방통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준정부기관 (57)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부) 한국무역보험공사 (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고용부) 근로복지공단 (중기부)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금융위)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처) 공무원연금공단
			(기재부) 한국재정정보원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과기부) 우체국물류지원단, (재)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구분	내용	기관명	
		형 (45)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행안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보훈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문체부) 한국관광공사 (농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산업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고용부)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해수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기타공공 기관(179) ※정원 100명 미만 기관 제외		(국조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교육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과기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재)우체국시설관리단,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방부) 전쟁기념사업회, 한국국방연구원 (보훈부) 독립기념관

구분	내용	기관명
		(문체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국제방송교류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대한체육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의전당,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진흥(주),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산업부) 대한석탄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전MCS,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복지부)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아동권리보장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재단법인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재단법인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한국보건 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한의약진흥원 (환경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환경보전원 (고용부) 건설근로자공제회, 노사발전재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여가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국토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새만금개발공사, 재단법인대건건설기계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주),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항공안전기술원 (해수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중기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주)공영홈쇼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진흥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한국벤처투자 (공정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금융위)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방통위) 시청자미디어재단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소방청)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구분	내용	기관명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 른 기 관 (213)		(유산청) 국가유산진흥원 (농진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기술진흥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특허정보원 (기상청)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제1항제1호(2)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제1항 제2호 (131) ※ 정원 100명 미만 기관 제외	공사 (64) (서울) 서울교통공사,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산) 부산교통공사, 부산관광공사, 부산도시공사 (대구) 대구교통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인천) 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도시공사 (광주) 광주교통공사, 광주광역시관광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전) 대전교통공사, 대전관광공사, 대전도시공사 (세종)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 경기관광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구리도시공사, 군포도시공사, 과천시공사, 광명도시공사, 광주도시관리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 남양주시공사, 부천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수원도시공사, 시흥도시공사, 안산시공사, 안양도시공사, 양주시공사, 양평공사, 여주시공사, 오산도시공사 , 용인도시공사, 의왕도시공사, 의정부도시공사 , 파주시관광공사, 평택도시공사, 포천시공사, 하남도시공사, 화성도시공사 (강원) 강릉관광개발공사 , 강원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충북) 충북개발공사 (충남) 천안도시공사 , 충청남도개발공사 (전남) 전남개발공사 (경북) 경상북도개발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구미도시공사 (경남)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경남개발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제주) 제주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단 (66)	(서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동구도시관리공단, 강북구도시관리공단,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광진구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도봉구시설관리공단,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동작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은평구시설관리공단, 중구시설관리공단,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부산) 부산광역시기장군도시관리공단,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대구)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달성군시설관리공단 (인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인천시설공단, 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광주)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구분	내용	기관명	
			광주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광주환경공단 (대전)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울산)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울산시설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경기) 가평군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연천군시설관리공단 (강원)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충북)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충주시시설관리공단 (충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전북)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전남) 여수시도시관리공단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경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군시설관리공단
		기타 (1)	(경기)(주)킨텍스
	제1항 제3호(2)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제1항 제4호 (78) ※ 정원 100명 미만 기관 제외	공제 회 (5)	경찰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연구 기관 (2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국· 공립 대학 (50)	강원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광주교육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교육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인천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교육대학교, 제주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한경국립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기타 (1)	중소기업중앙회

주 1. 기관순서는 중앙행정기관 중 부·처·청(「정부조직법」상 순서), 광역시·도(행안부, 「2024년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상 순서)를 제외한 나머지는 가나다 순임

2. 신규 지정기관은 **적색**, 명칭 및 유형변경 기관은 **청색** 표기